

의안번호	제408호
의결 연월일	2012년 월 일 (제 316 회)

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12년 11월 2일

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칩

# 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08
----------	-----

제출연월일 : 2012년 11월 2일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 1. 제안사유

- 「동물보호법」이 개정·시행('12. 2. 5.)됨에 따라 동물등록제 관련 규정 등 법령 위임사항을 마련하고, 동물의 보호·관리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 2. 주요내용

- 등록대상동물의 유실·유기 방지를 위한 등록 의무화(안 제3조)
- 도지사가 일정 기준에 따라 동물 등록 제외지역을 정하여 고시(안 제4조)
- 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동물보호센터 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5조제4항)
- 유실·유기동물에 대한 필요조치 규정(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 동물 포획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보호조치시 공고 및 반환·처분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제8조)
- 피학대 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9조)
- 시·군 동물 보호업무 경비에 대한 도지사의 지원(안 제10조제1항)
- 동물 보호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2항)
- 동물등록시 수수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 시행 중 조례 붙임

5. 관계법령 발췌 : 붙임

6. 비용추계서 : 붙임

## 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동물 보호·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실·유기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상자 등에 담겨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2. "보호조치"란 유실·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의 급여와 급수·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보호·관리함을 말한다.
3. "동물보호센터"란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가 유실·유기동물보호를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하여 유실·유기동물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①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등록대상동물을 소유한 자(이하 "소유자"라 한다)는 그 동물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2. 시장·군수가 동물등록 업무를 위탁한 자(이하 "등록대행자"라 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등록을 신청한 동물에 대하여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동물등록번호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의 등록대행자는 등록대상동물 소유자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동물등록신청서(변경신청서)를 받으면 등록한 후 5일 이내에 그 등록한 사항을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는 통보받은 제3항에 따른 등록 사항을 확인한 후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등록증을 소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동물 등록 제외지역)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지사가 해당 제외지역을 정하여 고시한다.

1. 오지(奧地), 벽지(僻地)
2.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

② 동물 등록이 제외되는 지역의 시장·군수도 동물등록 관련 정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및 지정) ① 도지사는 동물보호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을 수 있는 동물보호센터는 별표 1의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기관·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라 개설된 동물병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3. 축산 또는 수의학 관련 학교 등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4.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③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 충청북도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동물보호센터 지정위원회(이하 “지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으며, 지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운영한다.

1. 지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은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수의사, 공중보건 전문가, 동물보호활동 경험자 등)로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 지정위원회는 신청 접수된 동물보호센터의 서류심사 및 현지점검 등 시설기준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한다.

⑤ 동물보호센터 지정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하며 재지정이 가능하고, 재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만료 30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재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19조 동물보호센터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재지정을 아니 할 수 있다.

⑥ 동물보호센터장은 반기마다 동물보호센터의 운영관리에 대한 현

황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도지사는 동물보호센터의 시설 및 준수사항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 15조제4항에 따라 연 2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제6조(동물의 포획) ① 도지사는 유실·유기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포획·보호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포획한 유기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공수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보호동물의 공고) 도지사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유실·유기동물을 포획하여 보호조치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소유자 등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동물의 반환 및 처분)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포획한 유실·유기동물의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된 동물일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보호조치 중인 유실·유기동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반환요구기간 내에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확인하여 소유자가 확실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보호조치 중인 유실·유기동물을 소유자에게 인계할 때에는 동물의 소유자에게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공고가 시작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유실·유기동물의 소유자 등이 나타나지 않거나 동물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분양·기증 또는 인도적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인 유실·유기동물을 분양하거나 기증하는 경우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등록을 하여 분양하거나 기증하여야 한다.

⑥ 법 제21조의 "동물을 애호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가진 자로 한다.

1.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
2. 법 제40조에 따른 동물보호감시원 및 법 제41조에 따른 동물보호명예감시원
3. 기증 또는 분양 받은 동물을 번식 등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사람

제9조(피학대동물 보호 및 관리) ① 도지사는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대받은 동물을 구조하여 소유자로부터 격리하여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동물보호센터에 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를 하되,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단체가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 그 단체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보호기간에 따른 보호에 소요된 비용을 산정하여 소유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④ 소유자가 보호비용을 납부하지 않아 소유권이 도지사에게 귀속된 해당 동물에 대하여는 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분양·기증 또는 인도적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동물보호업무의 지원 및 보호비용) ① 도지사는 유실·유기 동물 및 피학대 동물 보호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시장·군수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소유자 또는 분양받은 자에게 청구하는 보호 조치에 따른 소요경비의 산출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1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물의 등록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건을 등록하는 경우 : 전액
2. 유기동물을 입양 또는 기증받아 등록하는 경우 : 전액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등록하는 경우 : 50%
4.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장착한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 50%
5.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또는 인식표를 분실하거나 훼손되어 재등록하는 경우 : 50%
6. 3마리 이상 등록하는 경우 : 50% (다만, 3마리부터 적용된다)

제12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동물의 효율적인 보호·관리 등을 위하여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보호 중에 있는 유실·유기동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동물보호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위탁보호시설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동물보호센터의 시설기준(제5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진료실, 사육실, 격리실 및 사료보관실을 각각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동물 구조 및 운반용 차량을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위탁보호센터 운영자가 동물에 대한 진료를 동물병원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진료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나. 동물의 탈출 및 도난방지, 방역 등을 위하여 방범시설 및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 다. 시설의 청결유지와 위생관리에 필요한 급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바닥은 청소와 소독이 용이한 재질이어야 한다. 다만, 운동장은 제외한다.
- 라. 보호동물을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동물의 수용시설과 독립된 별도의 처리공간이 있어야 한다. 다만, 동물보호센터 내 독립된 진료실을 갖춘 경우 그 시설로 대체할 수 있다.
- 마. 동물 사체를 보관할 수 있는 잠금장치가 있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개별기준

- 가. 진료실에는 진료대, 소독장비 등 동물의 진료에 필요한 기구·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2차 감염을 막기 위해 진료대 및 진료기구를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나. 사육실은 다음의 시설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동물을 위생적으로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온도 및 습도 조절이 가능하여야 한다.
  - 2) 채광과 환기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3) 사육실이 외부에 노출된 경우, 직사광선, 비바람 등을 피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다. 격리실은 다음의 시설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 2) 외부환경에 노출되어서는 아니 되고, 온도 및 습도 조절이 가능하며, 채광과 환기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 3) 전염성 질병에 걸린 동물은 질병이 다른 동물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별도로 구획되어야 하며, 출입구에 소독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 4) 격리실에 보호중인 동물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상태를 수시로 관찰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다만, 해당 동물의 습성상 사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라. 사료보관실은 청결하게 유지하고, 해충이나 쥐 등이 침입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하며, 상호 오염원이 될 수 있는 그 밖의 관리물품을 보관하는 경우 서로 분리하여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 마. 진료실, 사육실 또는 격리실 내에서 개별 동물을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크기는 동물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이어야 하며, 개와 고양이의 경우 권장하는 크기는 아래와 같다.
    - 가) 소형견(5kg 미만): 50 × 70 × 60(cm)
    - 나) 중형견(5kg 이상 15kg 미만): 70 × 100 × 80(cm)
    - 다) 대형견(15kg 이상): 100 × 150 × 100(cm)
    - 라) 고양이: 50 × 70 × 60(cm)
  - 2) 시설의 바닥이 철망 등으로 된 경우 철망의 간격이 동물의 발이 빠지지 않는 규격이어야 한다.
  - 3) 시설의 재질은 청소, 소독 및 건조가 쉽게 되고 부식성이 없으며 동물에 의해 쉽게 부서지거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하며, 시설을 2단 이상 쌓은 경우 충격에 의해 무너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4) 배설물을 처리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고, 매일 1회 이상 분변 등을 청소하여 동물이 위생적으로 관리될 수 있어야 한다.
  - 5) 동물을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외부에 표지판이 붙어 있어야 한다.
- 바. 동물구조 및 운송용 차량은 동물을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도록 개별 수용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화물자동차인 경우 직사광선, 비바람 등을 피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별표 2]

**동물보호 소요경비 산출기준(제10조 관련)**

1. 일반 관리 기준

가. 사료 등 급여

동물명	규격	사료급여기준(1마리/1일)
개, 고양이	6개월령 이하	습식 또는 건식으로 250kcal/kg
	6개월령 초과	습식 또는 건식으로 100kcal/kg
기타	-	해당동물의 생태에 따라 보호센터장이 정함

나. 인건비

- ① 포획비 : 정부노임단가기준 중 제조부문의 안전관리사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 ② 보호·관리비(1마리/1일) : 정부노임단가기준 중 제조부문의 안전관리사 노임액의 100분의 20이내

다. 일반운영비 : 소독 등 위생관리 및 기타 보호관리에 소모되는 물품 금액 등은 시장·군수와 동물보호센터장간에 협의하여 정한다.

라. 위의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때에는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와 동물보호센터장간에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치료비

가. 치료비는 보호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인근 동물병원 진료수가에 따른다.

나. 가목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는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와 동물보호센터장간에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 기타비용

가. 수송비 : 포획한 지역의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등록된 자를 말한다)가 정한 운임 및 요금을 적용한다.

나. 인도적 처리비(마취, 심박동정지) : 인도적 처리에 소요된 실비를 지급한다.

다. 사체처리비 : 사체처리에 소요된 특정폐기물 처리비용에 따른다.



첨부서류	1. 동물등록증(변경신고 시) 2. 등록동물의 분실 경위서(분실 시) 3. 등록동물의 폐사 증명서류(폐사 시)	수수료	
		신규 · 무선식별장치 및 등록인식표의 분실 또는 훼손	변경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제출 서류)	1. 동물소유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 초본(등록, 소유자 변경 신고 시)		
		1. 무선식별장치 체내삽입: 2만원 2. 무선식별장치 체외부착: 1만5천원 3. 등록인식표의 부착: 1만원	무료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표 등본 · 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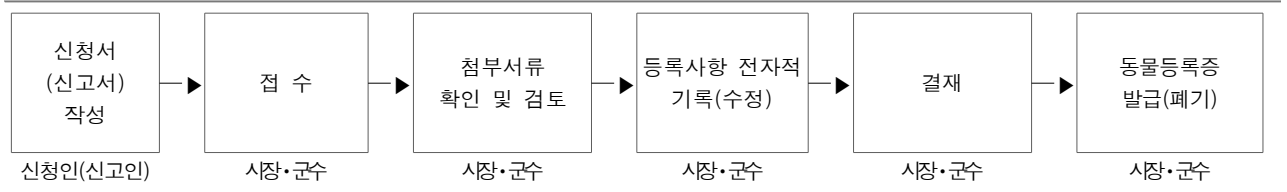
[동의]

1. 동물등록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위 신청인(신고인) 정보와 신청 신고내용을 등록 유효기간 동안 수집·이용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2. 유기·유실동물의 반환 등의 목적으로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의 정보와 등록내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유의사항

- 다음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가. 소유자
  - 나. 소유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등록동물의 분실 또는 폐사
  - 라. 등록동물의 분실 후 회수
  - 마.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의 분실 또는 훼손
- 잃어버린 동물에 대한 정보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http://www.animal.go.kr))에 공고됩니다.
- 소유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전입신고 시 변경신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동물의 분실 또는 폐사의 경우 또는 등록동물의 분실 후 회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http://www.animal.go.kr))을 통해 변경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처리절차



[별지 제2호서식]

(앞쪽)

<b>동물등록증</b>		
동물등록번호 :		
소유자 정보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동물의 정보		
이름:	성별:	중성화: 0/X
축종:	품종:	털색:
생년월(일):	기타특징:	
「동물보호법」 제12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3항, 「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b>시장·군수</b>		<b>직인</b>

100mm×60mm[보존용지(1종) 120g/m<sup>2</sup>]

(뒤쪽)

변경내용		일자/확인 인
(변경항목)	(변경내용)	(일자)/(확인서명)
* 이 등록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십시오. 시장·군수: 주소 및 전화번호		

비고 : 동물등록증의 재질과 규격은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을 고려하여 변경 가능

[별지 제3호서식]

공고 번호 제      호

## 동물보호 공고문

「동물보호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시행규칙 제20조, 「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 제7조에 따라 구조된 동물의 보호상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1. 동물의 정보

축종		보호동물사진 (5X6Cm)
품종		
털색		
성별	암 / 수 / 미상	
중성화 여부	예 / 아니오 / 미상	
특징		

### 2. 구조 정보

구조일	
구조사유	
구조장소	
공고기간	

### 3. 동물보호센터 안내

관할보호센터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4. 기타

위 동물을 잃어버린 소유자는 보호센터로 문의하시어 동물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만, 「동물보호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소유자에게 보호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물보호법」 제17조, 「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 제7조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년                      월                      일

( 도지사, 시장·군수)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 120g/㎡)

## <현재, 시행 중인 조례>

### 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

(제정) 2009-04-10 조례 제 314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기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주인없이 돌아다니거나 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2. “등록대상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 “월령 3개월 이상으로 가정에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말한다.
3. “보호조치”란 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의 급여와 급수·운동·휴식과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며, 동물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고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관리함을 말한다.
4. “보호시설”이란 유기동물 보호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5. “위탁보호시설”이란 시장·군수와 위탁계약에 의하여 유기동물 보호를 위탁 받은 자(이하 “위탁보호자”라 한다)가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등록대상동물의 보호와 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이하 “소유자”라 한다)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하게 할 수 있다.

1. 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2.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시장·군수가 동물등록업무를 대행하도록 지정한 자
-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을 신청한 동물에 대해서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등록번호 체계에 따른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부착 또는 삽입하거나 동물등록번호가 기재된 인식표를 붙여야 한다.
- ③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신청을 받으면 2일 이내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입력한 후 그 등록한 사항을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는 등록한 사항을 확인한 후 3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등록증을 소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으로 시행규칙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동물의 소유자는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⑥ 시행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동물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훼손으로 못쓰게 되어 등록증 재발급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⑦ 시장·군수는 관할하는 지역의 등록대상 동물 수, 행·재정적 여건 등을 감안하여 동물등록의 세부시행 방법, 절차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법 및 「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시·군의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조(유기동물에 대한 보호·관리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유기동물을 보호 조치하는 경우에는 그 동물이 안전하도록 보호·관리되어야 한다. 이 경우 유기동물이 이미 등록되어 있으면 해당 동물의 소유자등에게 그 동물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유기동물을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보호시설 또는 위탁보호시설에 수용하여 보호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하면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공수의 또는 동물병원의 수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를 한 경우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공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 모두와 같다.

1. 동물의 종류, 연령, 성별, 특징 및 사진
2. 포획장소 및 시간
3. 보호조치장소
4. 반환기간 및 절차
5. 그 밖에 반환기간 경과 후의 처리방법 등

④ 제2항에 따라 보호조치중인 유기동물에 대하여 소유자등이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반환을 요구하면 관련 정보를 확인하여 소유자등으로 확인되면 그 동물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보호중인 유기동물을 분양 또는 기증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보호조치의 위탁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탁보호시설은 별표 3의 기준을 갖춘 시설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라 개설된 동물병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하는 동물보호시설



3. 축산학 또는 수의학 관련 학교 등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시설

4.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동물보호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시설

② 위탁보호자는 매 년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보호시설의 운영·관리에 대한 현황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보고결과 보호·관리 상태가 적합하지 아니하면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위탁보호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유기동물에 대한 보호·관리를 게을리 하거나 그 수행능력이 없는 경우

2.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3. 보호시설로서의 기능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보호동물학대 등 기타의 사유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의견청취(진술)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보호조치에 따른 소요경비) ① 도지사는 유기동물 보호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시장·군수 또는 위탁보호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유기동물의 보호·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유자 또는 분양받은 자에게 청구하는 유기동물의 보호조치에 따른 소요경비의 산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수수료의 징수 등) ① 법 제22조에 따라 동물의 등록 등을 하려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시·군이 발행하는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수수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등록대상동물 중 유기동물을 기증 또는 분양받아 등록하는 경우

2.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건을 등록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2. 중성화수술이 된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③ 2마리 이상 동시에 등록하면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수수료의 25퍼센트를 각각 경감할 수 있다.

제9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보호시설의 효율적인 설치 등을 위하여 제3조, 제4조, 제5조 및 법 제10조제1항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제10조(과태료) ① 법 제26조제7항에 따라 제3조를 위반하여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에 따른다.

#### 부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5조, 제10조는 2009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보호시설 또는 위탁보호시설에 보호하고 있거나 위탁보호 중인 유기동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충청북도 유기동물 보호조치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별표 1]

유기동물보호 소요경비 산출기준(제6조제2항 관련)

1. 사료급여기준

동물명	규격	사료급여량(1마리)
개	10kg이하	전용사료 300g이나 사육전용 통조림 300g
	10kg초과	전용사료 600g이나 사육전용 통조림 600g
고양이	-	전용사료 300g이나 사육전용 통조림 300g

- 비고 ① 위의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때에는 보호시설의 관리인 또는 위탁보호자와 협의하여 사료의 종류와 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기타의 동물에 대한 사료급여기준은 시장·군수가 별도 고시한다.  
 ③ 사료첨가제, 식염 기타의 무기물은 동물의 건강상태에 따라 충분한 양을 급여하도록 한다.

2. 관리에 대한 수당

정부 노임단가기준 중 제조부문의 안전관리사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제3호의 위탁보호수수료를 적용하는 때에는 이 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위탁보호수수료(1일/1두)

정부노임단가기준 중 제조부문의 안전관리사 노임액의 100분의 20이내

4. 포획인부의 노임

정부노임단가기준 중 제조부문의 안전관리사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5. 치료비

- 가. 치료비는 보호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인근 동물병원 진료수가에 따른다.  
 나. 가목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는 시장·군수와 위탁보호자간에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6. 수송비

포획한 지역의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등록된 자를 말한다)가 정한 운임과 요금을 적용한다.

7. 기타비용

- 가. 인도적 처리비(마취, 심박동정지) : 인도적 처리에 소요된 실비를 지급한다.  
 나. 사체처리비 : 사체처리에 소요된 특정폐기물 처리비용에 따른다.

8.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산출경비에 대하여는 유기동물의 소유자 등 관계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별표 2]

### 수수료 징수기준(제7조, 제8조 관련)

1. 법 제5조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동물의 등록(변경) 또는 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구 분	수 수 료
1. 마이크로칩 시술(장착)할 경우	19,000원
2. 인식용 목걸이(전자태그)를 할 경우	8,000원
3. 등록증 재발급	5,000원

2. 법 제15조와 시행규칙 제16조·제17조에 따른 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구 분	수 수 료
1. 신규 등록	10,000원
2. 등록된 사항의 변경신고	5,000원
3. 등록증 재발급	5,000원

[별표 3]

## 보호시설의 기준(제5조 관련)

### 1. 일반기준

- 가. 진료실, 사육실, 격리실 및 사료보관실을 각각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위탁보호시설 운영자가 동물에 대한 진료를 동물병원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진료실과 격리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나. 동물의 탈출 및 도난방지, 방역 등을 위하여 방범시설 및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출입문이 있어야 한다.
- 다. 시설의 청결유지와 위생관리에 필요한 급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라. 보호동물을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동물의 수용시설과 독립된 별도의 처리공간이 있어야 한다.
- 마. 동물 사체를 보관할 수 있는 잠금장치가 있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2. 개별기준

- 가. 진료실에는 진료대, 소독장비 등 동물의 진료에 필요한 기구·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나. 사육실은 다음의 시설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동물을 위생적으로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온도 및 습도 조절이 가능하여야 한다.
  - 2) 채광과 환기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3) 동물은 종류별, 성별(어리거나 중성화되어있는 동물은 제외한다), 크기별로 질환이 있는 동물(상해를 입은 동물을 포함한다), 공격성이 있는 동물, 늙은 동물, 어린 동물(어미와 함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새끼를 배거나 젖을 먹이고 있는 동물은 분리하여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 다. 격리실은 다음의 시설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 2) 외부환경에 노출되어서는 아니 되고, 온도 및 습도 조절이 가능하여야 한다.
  - 3) 채광과 환기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4) 전염성 질병에 걸린 동물은 따로 수용될 수 있어야 한다.
- 라. 사료보관실은 청결하게 유지하고, 해충이 침입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 마. 진료실, 사육실 또는 격리실 내에서 개별 동물을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는 설비는 다음의 설비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동물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이어야 하되, 개와 고양이의 경우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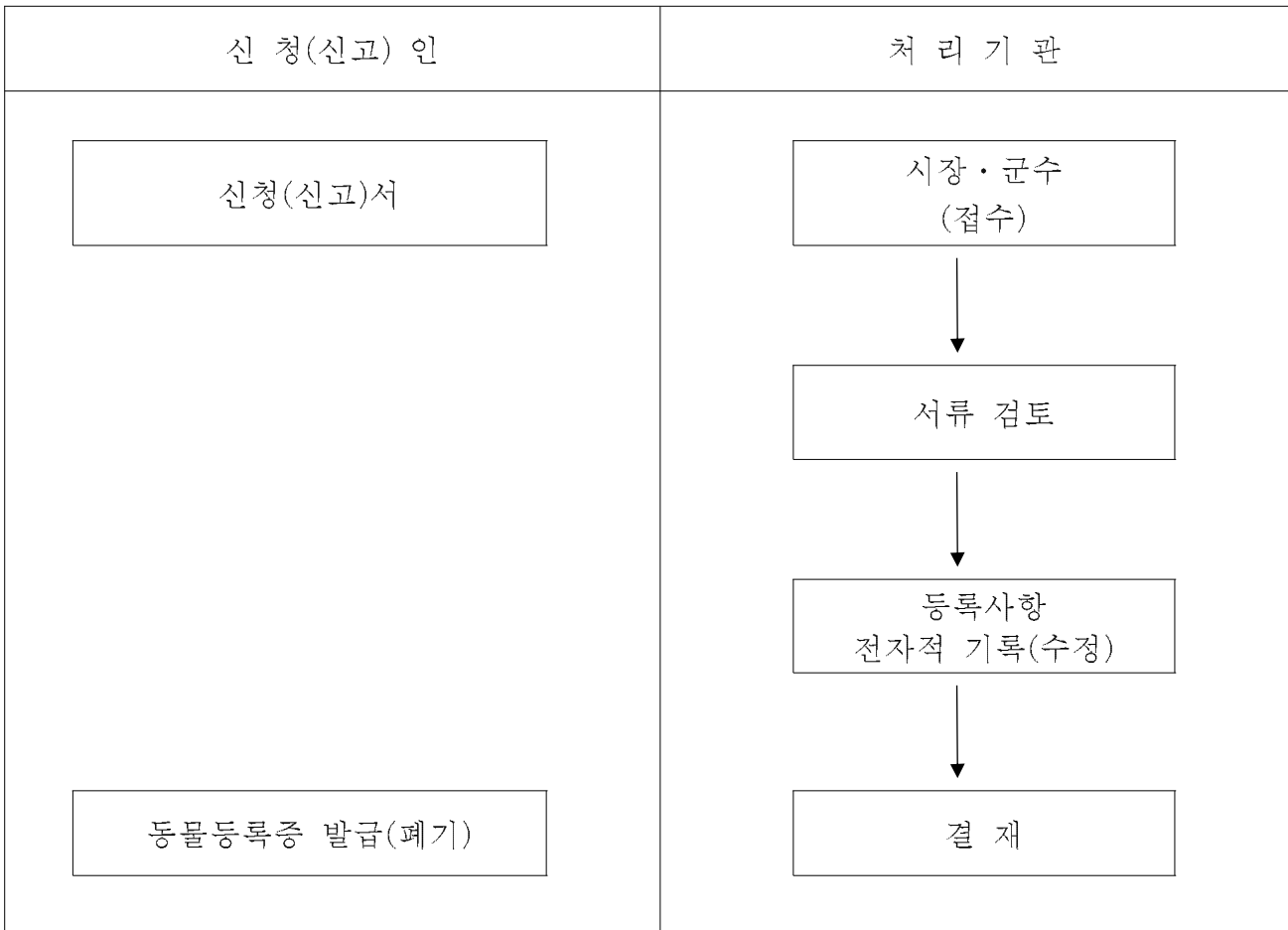
바닥면적이 마리당 0.5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2) 재질과 구조는 배수, 청소, 소독 및 건조가 쉽게 되고 부식성이 없으며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 3) 배설물을 처리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 4) 동물을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외부에 표지판이 붙어 있어야 한다.



1. 다음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가. 소유자
  - 나. 소유자의 주소와 전화번호
  - 다. 등록동물의 분실 또는 폐사
2. 잃어버린 동물에 대한 정보는 관할 시·군 홈페이지에 공고됩니다.
3. 분실 신고 후 6개월 이내에 잃어버린 동물을 찾으면 신고인의 신분을 확인 한 후 동물등록증을 반환합니다.
4. 분실 신고 후 6개월 이내에 신고인에게 동물등록증이 반환되지 아니하면 동물등록증은 폐기됩니다.

※ 이 신청(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동물등록증												
동물등록번호		등록동물 사진 (3cm×4cm)										
소유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동물	이름	성별	중성화	○ / ×								
	품종	털색갈	생년월									
「동물보호법」 제5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 인												

100mm×60mm[보존용지(1종) 120g/m<sup>2</sup>]

변경내용		일자/확인인
(변경항목)	(변경내용)	(일자)/(확인서명)
※ 이 등록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등록관청: 주소와 전화번호		

비고: 동물등록증의 재질과 규격은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을 고려하여 변경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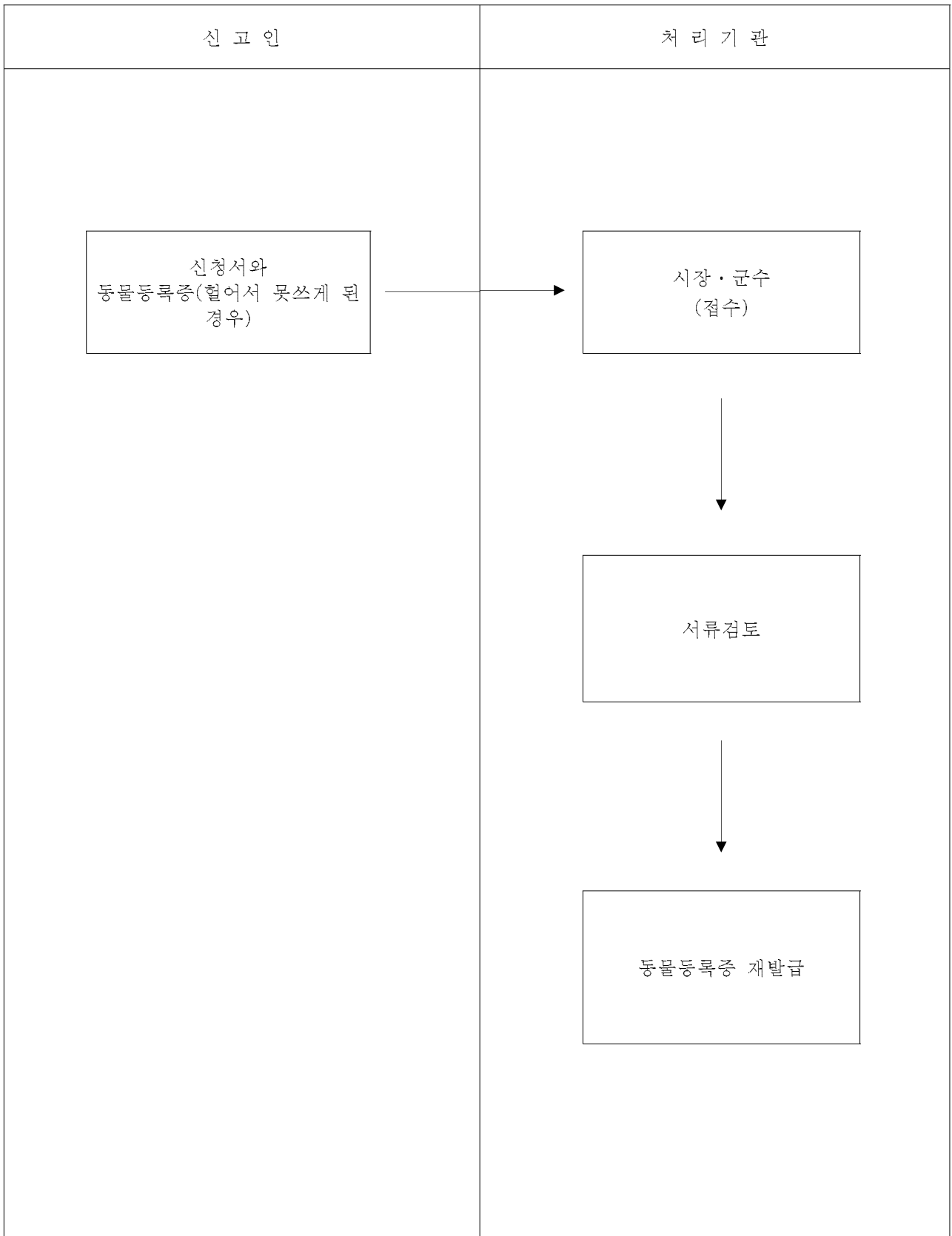
[별지 제4호서식]

유기동물(분양·기증·변경) 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①신 청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단체명								
	단체사무실주소								
	주소(대표자)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대표자)					
② 동 물	이름	품종	털색깔	성별		증성화		특징	기타 특이사항
				암	수	여	부		
③ 소 유 자 변 경 사 항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소유자(단체대표자)								
	주소(단체주소)								
	전화번호(단체전화번호)								
④동물 변경 사항	분실								
	폐사								
<p>「동물보호법」 제9조제4항·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와 「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 제4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기동물(기증·분양·변경)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p> <p>시장·군수 귀하</p>									
<p>※ 신고안내</p> <p>1. ③소유자 변경사항란과 ④동물변경사항란은 변경신청 시에만 적습니다.</p> <p>2. ④동물변경사항란은 분실·폐사 발생일, 발생장소, 원인 등 경위를 적습니다.</p>									
구비서류	1. 신청자(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 2. 동물보호 민간단체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p>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서명 또는 인)</p>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 관련법령 발췌

### □ 동물보호법

제12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⑤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사항 및 방법·절차, 변경신고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며,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4조(동물의 구조·보호)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제7조에 따라 치료·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하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은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 중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은 구조·보호조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종이상자 등에 담겨져 내버려진 동물(이하 "유실·유기동물"이라 한다)
2. 제8조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은 동물(이하 "피학대 동물"이라 한다)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3. 소유자로부터 제8조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

제1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제1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관이나 단체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제1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에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에 드는 비용(이하 "보호비용"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보호비용의 지급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⑧ 동물보호센터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동물보호센터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⑨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지정절차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7조(공고) 시·도지사는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동물을 보호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이 보호조치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7일 이상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8조(동물의 반환 등)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4조에 해당하는 동물을 그 동물의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이 보호조치 중에 있고, 소유자가 그 동물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2. 제14조제2항에 따른 보호기간이 지난 후, 보호조치 중인 제14조제1항제3호의 동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라 보호비용을 부담하고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② 시·도지사는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반환과 관련하여 동물의 소유자에게 보호기간, 보호비용 납부기한 및 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제19조(보호비용의 부담) ① 시·도지사는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보호비용을 소유자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분양을 받는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보호비용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그 동물의 소유자가 내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동물의 소유자가 제20조제2호에 따라 그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보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비용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보호비용의 산정 기준에 관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20조(동물의 소유권 취득) 시·도가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에도 불구하고 제17조에 따라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동물의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
2.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소유자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3.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소유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호비용의 납부기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보호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제21조(동물의 분양·기증) ① 시·도지사는 제20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이 적정하게 사육·관리될 수 있도록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원, 동물을 애호하는 자(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한정한다)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20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라 분양될 수 있도록 공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기증·분양의 요건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22조(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 ① 제15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장 및 운영자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게 질병 등 농림수산물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42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수산물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려는 자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 및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부분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조(시장·군수·구청장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제42조제1호, 제45조제1항제2호, 제4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7조(공고)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은 법 제17조에 따라 동물 보호조치에 관한 공고를 하려면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1항에 따른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의 장(이하 "검역검사본부장"이라 한다)이 구축·운영하는 시스템(이하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보호 공고문을 작성하여 다른 방법으로 게시하되,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그 내용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7조(동물등록제 제외 지역의 기준)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수 있는 지역으로 정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島嶼), 오지(奧地), 벽지(僻地)
2.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

제9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소유자
  2. 소유자의 주소
  3. 소유자의 전화번호
  4.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리거나 등록대상동물이 죽은 경우
  5. 등록대상동물 분실 신고 후, 그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6.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는 경우
-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변경된 소유자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에는 등록동물의 소유자가 각각 해당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



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동물등록 신청서(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소유자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동물등록증

2. 등록동물을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그 경위서

3. 등록동물이 죽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그 경위서

③ 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변경신고를 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등록증을 발급하고, 등록사항을 기록·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경우 변경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의 주소를 정정하고, 등록사항을 기록·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3호·제4호 또는 제5호의 경우 소유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

⑨ 제7조에 따라 동물등록이 제외되는 지역의 시장·군수는 소유자가 이미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의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에 대해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동물등록 관련 정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15조제1항 및 제3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4의 동물보호센터의 시설기준을 말한다.

④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한 시·도지사는 제1항의 기준 및 제19조의 준수사항을 충족하는 지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제16조(동물의 보호비용 지원 등) ①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동물의 보호비용을 지원받으려는 동물보호센터는 동물의 보호비용을 시·도지사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청구받은 경우 그 명세를 확인하고 금액을 확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동물보호센터의 준수사항) 법 제15조제9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준수사항은 별표 5와 같다.

제20조(광고) ① 시·도지사는 영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동물 보호조치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동물보호 광고문을 작성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1조(보호비용의 납부) ④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비용은 수의사의 진단·진료 비용 및 동물보호센터의 보호비용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안 비용추계서

### 1. 사업개요

- 원활한 동물보호 업무수행을 위하여 시·군에서 동물보호센터를 설치하거나,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의 보호조치로 인수공통전염병 예방과 동물보호·복지, 도민정서함양에 기여

### 2. 비용발생 요인

- 유기동물 등의 보호·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동물복지를 고려한 (거점)동물보호센터 설치에 필요한 비용
- 소유자 등이 없이 도로·공원 등을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유기동물 등의 구조 및 보호 관리에 필요한 비용

※ 도지사 고유사무로써 시장·군수에 사무위임에 따른 비용의 일부지원

### 3. 관련조문

- 제10조(동물보호업무의 지원 및 보호비용) ① 도지사는 유실·유기 동물 및 피학대 동물 보호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시장·군수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근거 법령 : 동물보호법 제14조, 제15조

- [별표 2] 동물보호 소요경비 산출기준

#### 4. 비용추계 결과

##### □ 추계의 전제

###### ○ 동물보호센터 설치비용

- 사업대상 : 청주시 선정
  - \* 선정사유 : 1. 지리적 여건(도 중앙에 위치, 타 시·군과의 접근성 편이)
  - 2. 도내 유기동물 발생두수 53%(청주·청원 60%)를 차지
  - 3. 도 지원거점 보호소로 육성(타시군에서 발생분까지 수용)
- 신축비용 : 10억원(국비30%, 도비14%, 시·군비56%)
- 부지비용 : 청주시 시유지 활용으로 추가비용 없음
- 추진계획 : '13년 거점동물보호센터 신축추진(예산계 협의완료)

###### ○ 유기동물 보호비용

- 사업대상 : 전년도 기준 유기동물 발생두수가 1,000두 이상인 시·군
- 사업량

연 도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사업량	6,500	1,300	1,300	1,300	1,300	1,300

\* 유기동물 발생두수가 매년 증가추세이고, 2014년 7월 청주·청원 통합으로 사업량이 증가될 수 있으나, 2013년 1월부터 동물등록제 의무시행(청주, 청원 포함)에 따른 발생두수 감소량을 감안하여 사업량을 1,300두로 결정

- 소요단가 : 10만원/1두(도비20%, 시·군비80%)

▶ 산출기준 : 일반관리비(사료비+인건비(포획비+보호·관리비)+운영비 등)  
+치료비+기타비용(수송비+인도적처리비+사체처리비)

\* 표준동물보호조례안 동물보호 소요경비 산출기준 의거

▶ 인건비 : 포획비+보호관리비(10일) = 87,939+17,578\*10일 = 263,719원

\* 한국물가정보 자재부문 안전관리사 노임단가 : 87,939원

\* 보호기간 : 일주일이상(보통 10일)

▶ 11년도 우리도 평균보호비용 : 101,046원(보은군 제외)

\* 유기동물 발생두수 및 보호비용

(단위 : 천원, 두)

구분	유기동물 발생두수				2011년도 보호비용	비고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계	1,785	2,028	2,219	2,354	234,124	
청주	1,001	1,112	1,204	1,254	119,757	
충주	253	319	387	402	39,128	
제천	191	196	198	224	27,837	
청원	69	88	110	148	21,900	
보은	9	20	23	37	-	민간인 무료보호
옥천	60	65	69	76	7,600	
영동	70	64	77	56	5,450	
증평	25	24	29	26	2,700	
진천	36	76	48	60	5,000	
괴산	7	11	26	14	425	
음성	48	35	31	28	1,857	
단양	16	18	17	29	2,470	

□ 추계 결과

○ 사업기간 : 2013 ~ 2017년(5년간)

○ 총 비용 : 16.5억원

- 동물보호센터 설치비용 : 10억원(국비3, 도비1.4, 시·군비5.6)

- 유기동물 보호비용 : 6.5억원(도비1.3, 시·군비5.2)

\* 연도별 1.3억원(도비0.26, 시군비1.04)

□ 재원조달 방안 : 일반회계에 편성

## 5.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3년)	2차년도 (2014년)	3차년도 (2015년)	4차년도 (2016년)	5차년도 (2017년)	계
세 입		300,000					300,000
세 출		1,130,000	130,000	130,000	130,000	130,000	1,650,000
유기동물 보호비용		130,000	130,000	130,000	130,000	130,000	650,000
동물보호센터 설치비용		1,000,000					1,000,000
재원 조달		1,130,000	130,000	130,000	130,000	130,000	1,650,000
의존 재원	소 계	300,000					300,000
	보조금	300,000					300,000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66,000	26,000	26,000	26,000	26,000	270,000
	지방세	166,000	26,000	26,000	26,000	26,000	270,000
	세외수입						
시·군비		664,000	104,000	104,000	104,000	104,000	1,080,000

## 6. 작성자 : 농정국 축산과장 현공율